

仲裁研究, 第 16 卷 第 2 號
2006년 8월 1일 발행, pp.213-238

논문접수일 2006. 6. 27
제재확정일 2006. 7. 14

연지급신용장 만기전 매입의 문제점과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각국의 판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nstructions of Negotiation
Before Maturity under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 Focus on the Cases of Different Countries -

김 경 배* Kyung-Bae Kim

〈목 차〉

- I. 서론
- II. 연지급신용장의 본질과 잠재적 위험요소
- III. 각국 법원 판례 및 학자·전문가들의 견해
- IV. 연지급신용장의 문제점과 유의사항
- V. 결론

주제어 : 연지급신용장, 매입, 신용장통일규칙, 독립추상성 원칙

* 대한상사중재원 팀장, 경영학박사

I. 서 론

국제무역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 대금결제방식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장이다. 이러한 신용장은 서로 다른 국가에 있는 당사자 간의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신용장은 국가마다 상관습이나 법체계가 달리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신용장을 사용되고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1983. 제4차 개정에서 전통적인 지급방식에 연지급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신용장통일규칙에 최초로 도입하게 되었다. 도입 당시 은행들은 연지급신용장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런데 2003년도에 우리나라 대법원이 연지급신용장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판결하였다. 즉, 연지급신용장의 법률관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연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 전 지급의 문제이다. 우리 법원은 개설 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기존의 프랑스 판례와 상반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 대법원의 판례를 계기로 연지급신용장의 본질과 잠재적 위험요소를 인식하고 또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 전 지급에 대한 각국의 법리와 학자·전문가들의 견해를 긍정적인 입장과 부정적인 입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각국의 법리와 학자·전문가들의 견해를 토대로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제 문제들을 제시하며 연지급신용장의 이용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연지급신용장 거래를 활성화 시키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향후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시에 반영할 연지급신용장 거래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 보고자 한다.

II. 연지급신용장의 본질과 잠재적 위험요소

1. 연지급신용장의 개념

(1) 연지급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은 신용장면에 표시된 지급방법 즉, 일람출금, 연지급, 인수, 매입 중에서 어느 방법에 의해서 지급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급형태가 결정되며 지급이 개설은행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면 지정은행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지급장소가 달라지게 된다.¹⁾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매수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의 유예를 두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따라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과 인수신용장(acceptance letter of credi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연지급신용장은 수출상이 선적서류를 제시하면 연지급은행이 수출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지급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신용장거래에서 약정한 특정기일이 경과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말한다.²⁾ 다시 말하면, 연지급신용장은 수익자가 필요한 서류를 제시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신용장에 약정된 만기에 그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을 의미한다.³⁾ 이러한 연지급신용장은 인수신용장과 달리 개설은행이 인수할 수 있는 환어음이 없는 것이 유일한 차이점이다.

연지급신용장거래에 있어서,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를 인도받는 시점과 대금상환요청을 받는 시점 사이에는 상당한 시

1)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 b항.

2)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9th ed., London, Stevens & Sons Ltd., 1990, p.422.

3) Gerald T. McLaughlin, U.C.C. Article 5 Symposium : Should Deferred Payment Letters of Credit Be Specifically Treated in A Revision of Article 5 ?, 56 Brooklyn L. Rev. 149, *Brooklyn Law School Spring*, 1990, p.152.

차가 존재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개설의뢰인은 수익자로부터 신용을 공여받는 결과가 된다. 연지급신용장의 주된 목적도 바로 신용장 대금의 지급유예를 통하여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에게 금융상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에 주된 취지가 있고 유럽 등지에서 신용장 개설시에 발행되는 환어음에 대한 인지세 등의 부담을 피하고 환어음의 유통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⁴⁾ 1983. 제4 차 개정에서 전통적인 지급방식에 연지급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연지급 신용장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2) 연지급신용장의 특징과 한계

연지급신용장(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⁵⁾은 독일이나 프랑스와 같이 환어음 발행에 따른 인지세가 높은 나라에서 환어음의 발행을 요하지 않은 기한부 신용장이 필요한데서 사용되는 것이다. 이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연지급약정서(deferred payment undertaking)를 발급하고 지정된 일자에 지급하는 신용장이다.⁶⁾ 연지급 신용장은 조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겠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환어음을 발행하지 않는다.⁷⁾ 즉, 지급신용장처럼 약정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할 때에 환어음이 첨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신용장은 어음이 발행되지 않으므로 외상기간 중 수출상이 할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금융조달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외상대금 결제은행이 직권

4) 채동현, “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전 지급과 매입의 법률관계” 인권과 정의 Vol.325, 대한변호사협회, 2003.9, p.167.

5) 연지급신용장은 1954-55년 극동지역 국가간의 특수한 무역형태로 일본에서 최초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약정된 상품을 수입상에게 제공한 후에 대금지급이 행해진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았기 때문에 영연방이나 미국의 은행들은 이의 사용을 바라지 않았다. 최봉혁, “연지급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지급이행에 관한 제문체”, 한국무역학회, 제11권, 1986.2, p.81.

6) 김한수 외,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개정배경·조문별해설-, 국제금융연구, 1997, p.54.

7) 배용원, 신용장, 무역경영사, 2003, p.201.

으로 발행한 지급확약서의 내용에 따라 지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는데 특징이 있다.⁸⁾

둘째, 기한부신용장이다. 즉, 서류제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신용장으로 일정기간에 대한 기간이익을 수입상이 향유한다.

셋째, 지급은행이 지정된다.

넷째, 대금이 후불된다. 인수신용장과 마찬가지로 대금은 운송서류를 제출한 후 신용장에서 규정된 일정시점에 지급된다.

연지급신용장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통적인 신용장의 지급보증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된다. 즉, 신용장의 본질에 부합하고 가장 정상적인 방법은 운송서류의 제출과 상환으로 은행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또한 은행이 어음을 인수한다는 것은 신용장에 의해 수익자에 주어지는 최초의 지급확약과는 별개로 어음법상의 지급의무가 추가되는 것을 의미하며 은행에 의해 인수된 어음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리한 비율로 자금화 할 수 있다.

그러나 연지급신용장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통이 가능한 지급보증수단을 취득할 수 없게 되며 신용장에 명시된 개설은행의 약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다.

(3) 연지급신용장의 유형

1) 개설은행이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 신용장은 지급형식의 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수익자가 개설은행에 운송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거래은행을 통하여 제출할 수밖에 없다. 이때 개설은행은 제시된 운송서류를 점검하여 신용장조건과 일치된다고 판단될 경우 연지급약정서를 발급하게 된다.

연지급신용장에서는 수입상이 화물을 인수한 다음에 지급이 이루어

8) 남풍우, 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2001, p.216.

지기 때문에 화물을 점검한 수입상이 품질불량의 이유로 만기에 지급을 중지시키려고 시도하게 될 우려가 있다.

2) 타은행에 지급을 수권하는 경우

연지급은행이 수출국에 소재하는 경우 수의자는 운송서류를 제출하고 연지급약정서를 발급받아 이를 거래은행에 할인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연지급약정서는 은행이 발행하는 지급약정서류이므로 은행이 발행한 일종의 약속어음 또는 은행이 발행하고 자신이 인수한 환어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배서에 의하여 유통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 연지급약정서의 법적성질에 관한 판례가 보고 된 바 없다.

2. 신용장통일규칙 및 연지급신용장상의 매입

(1) 신용장통일규칙상의 매입

신용장통일규칙상 매입(negotiation)의 정의와 그 시기에 관하여 1983년 개정 제4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매입에 관한 정의규정이 없었으나 1993년 개정된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는 정의규정이 규정되어 있다. 매입이란 매입하도록 수권을 받은 은행 즉, 매입은행이 환어음 및/또는 서류에 대한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⁹⁾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만을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다라고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 규칙의 해석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은행위원회는 1994. 9. 1. 자 의견서(Position Paper No.2)에서 위 제5차 개정 UCP 제10조 b항 ii호에 명시된 대가의 지급(giving of value)이라 함은 현금, 수표, 은행을 통하여 이체,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즉시 지급하는 것 또는 지급할

9)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b항 ii호.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서류의 매입은 매입을 수권 받은 은행이 현금,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수익자에 현실적인 대가를 즉시 지급하거나 대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후자의 방법에 의한 매입은 매입은행이 특정 일자에 수익자에게 대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현실적인 대가의 즉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여 ICC 은행실무위원회의 해석을 좀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정의하고 있다.¹⁰⁾

(2) 연지급신용장상의 매입

연지급신용장의 개설 시에 환어음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그와 같은 환어음이 존재하지 않아 매입을 위한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연지급신용장의 매입가능성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¹¹⁾ 그러나 신용장 거래에 있어 환어음은 개별국가의 환어음에 대한 규제와 그 비용 등 절차를 피하기 위하여 유럽에서는 발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용장의 개념 자체가 환어음의 존재를 반드시 전제하는 개념이 아니며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에 매입의 개념에 의하더라도 신용장의 매입은 환어음이 아니더라도 신용장에 관련된 서류를 인수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하면서 매입은행으로서 추상적인 수익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환어음의 존부는 매입가능성 여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연지급신용장은 환어음이 발행되지 않지만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매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용장통일규칙에서 규정한 매입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¹²⁾

그러므로 연지급신용장에 있어서 매입이 가능한지의 여부는 환어음

10)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판결.

11) 유중원, 신용장론-신용장의 법리 및 신용장통일규칙의 축조해설-, 육법사, 1998, p.618.

12) 이체현, “지급신용장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제19권 제3호, 2004. 9, p.185.

이 발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질 문제가 아니고 각각의 해당 신용장마다 별개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3) 신용장통일규칙의 법적 성질

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민간기구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하였기 때문에 관계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용장상에 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규칙 및 관례에 적용을 받는다는 내용의 문구를 표시하여야만 한다. 따라서 무역거래에서는 수입상과 개설은행간 신용장발행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신용장발행 신청서나 수출상과 개설은행간 신용장계약의 성격을 갖는 신용장의 문면 상에 신용장통일규칙을 준수한다는 준언문언을 삽입하여야 한다.

신용장통일규칙은 임의법규이기 때문에 관계당사자간 이와 다른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이 우선한다. 따라서 Gutteridge & Maurice(1984)는 동 규칙은 법률은 아니지만,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당사자를 구속 한다라고 하였다.¹³⁾

이와 같이 신용장통일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① 국제적인 상거래법설 ② 고유한 규범체계설 ③ 일반거래약관설 ④ 상관습설 ⑤ 일반거래약관과 상관습의 혼합설 ⑥ 상관습법설 등 다양한 학설이 제시되고 있다.¹⁴⁾ 일반적인 통설은 상관습법설로 그 법규적 성질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종의 계약상의 거래에 관한 규정으로 강행법규가 아니고 임의법규에 해당할 뿐이기 때문에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13) Gutteridge, H.C., Maurice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td., London, 1984, p.6

14) 유중원, 전계서, pp.103-115.

3. 연지급신용장의 잠재적 위험요소

연지급신용장은 수출상이 수입상의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외상거래를 수용한 것이다. 수입상은 연지급신용장을 이용하여 수입상품을 인수하고 동 상품을 판매한 후 수출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지 수입상이 지급기간 중에 수입상품의 품질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상품이 수출입매매계약과 일치하지 않으면 신용장개설은행으로 하여금 대금지급을 거절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아니다.¹⁵⁾

그러나 수익자가 정당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은행이나 수입상에 의해 대금지급을 거절하려고 시도하는 경우 즉, 수입상에 의한 지급방해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나 대부분 성공하지 못할뿐더러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계약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다.

또한 개설은행이 할인에 의하지 않고 조기 지급하였을 경우 연지급신용장에서 수입상의 권리 즉, 서류인수와 상환으로 즉시 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약정된 일자에 지불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은 신용장통일규칙상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편, 수입상의 지시사항 준수에 관한 문제로 연지급신용장을 개설하는 수입상의 동기가 비록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은행은 그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으며 만약 수입상의 지시가 지정된 일자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신의 의도를 명백히 표명하였을 경우 그러한 지시는 당연히 은행을 구속한다. 그러나 이 신용장의 주된 목적이 반드시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수입상의 지시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따라서 특정 일자에 연지급한다는 약정은 반드시 그 날짜에 지급한다는 의미와 특정 일자까지 신용기간을 연장하

15) 오병석,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 무역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4, p.262.

고자 하는 의미로 각국의 법리가 상이하게 존재하여 연지급신용장의 이용함에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III. 각국 법원판례 및 학자·전문가들의 견해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이나 수권을 받은 지정은행이 있어 그들 은행이 만기 전에 신용장의 대금을 수익자에게 할인하여 지급하고 신용장 관련 서류를 취득하는 것이 그들 은행이 선의의 매입은행으로서 보호를 받는가의 문제에 대하여 각국의 판례와 법리 및 학자·전문가들의 견해¹⁶⁾를 긍정적 입장과 부정적 입장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긍정적 입장

(1) 판례

1) 스위스

스위스 연방법원은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신용장 거래의 원인이 되는 거래의 매수인(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상품을 조기에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신용장 대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하는 신용유예에 그 목적이 있고 이것이 바로 연지급에 의하여 개설의뢰인이 받은 이익이라고 하면서 연지급신용장은 만기 전에 확인은행 혹은 개설은행에 의한 할인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할인에 의하여 수익자는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원인관계가 신용장의 추상적인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연지급신용장을

16) 대법원이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 판결을 전후하여 세계 각국의 저명한 신용장 전문가들에게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대금지급과 매입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해 의견을 구한 결과를 요약·정리한 것임.

만기 전에 매입한 은행을 보호하였다.

스위스 연방법원은 연지급신용장의 주된 목적은 수입상에게 신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것이며 이러한 목적은 약정된 날짜 이전에 할인을 이행할지라도 수입상의 연지급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수입상은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신용기간의 연장과는 별도로 상품을 검사할 기회를 갖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지급기간의 연장은 은행이 대금지급을 이행하기 이전에 상품을 검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연지급신용장은 상품의 불일치를 이유로 수입상이 은행에게 대금지급을 정지토록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의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많은 법원들이 동조하고 있다.¹⁷⁾

2) 독일

독일 법원은 연지급신용장과 사기에 관한 사건에서¹⁸⁾ 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원인관계의 항변으로서 확인은행이 선의인 이상 그 은행이 만기 전에 수익자에게 신용장대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목적이 개설의뢰인에게 자금 지급의 유예를 주고자 함에 있어 수익자의 만기 전 대금의 회수를 당연히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¹⁹⁾

3) 이탈리아

이탈리아 법원은 연지급신용장의 목적이 개설의뢰인의 대금 지급유예에 있음을 명백히 하면서 연지급신용장의 목적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연지급신용장

17) 최봉혁, 전계논문 1986, p.90.

18)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1981. 3. 13. 판결(Wertpapier Mitteilung 17-25 April 1981 S.445).

19) 정진서,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지급에 관한 프랑스판례의 특이한 입장”, 상사법 연구, 정진세교수정년기념, 2001. 9, pp.658-660.

의 목적과 그 개별적 간접적 효과를 혼동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하여 확인은행은 당연히 만기 전에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확인은행을 보호하였다.²⁰⁾

4) 한국

대법원²¹⁾은 신용장 개설은행의 확인은행 및 지급은행에 대한 수권 및 상환의무에 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0조 a항, b항 i호, c항, d항, 제14조 a항의 각 규정의 취지와 신용장통일규칙상 지정은행에 의한 연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 전 지급이나 선적서류 매입을 금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국제적 거래에서 신용장이라는 독립적이고 추상적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기본적 취지가 수의자의 대금결제에 대한 불안을 제기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독립추상성에서 발생하는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 비추어, 대금의 지급이 특정 기일로 지정되어 있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도 개설은행에 의하여 선적서류의 매입의 방법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특별한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개설은행의 위 지정은행에 대한 수권 속에서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더라도 개설은행이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고(다만, 개설은행은 만기 전까지는 그 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연지급신용장의 개설에 환어음의 발행이 수반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선적서류 등과 함께 신용장을 매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연지급신용장도 지정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한 그 은행에 의한 매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20) 이탈리아 볼로냐 법원 1981. 5. 15.판결(Banca Borse Titolo de Credito 1981. 3. 17.).

2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판결.

(2) 견해

Boris Kozolchyk²²⁾ : 신용장통일규칙상 확인은행은 그 자체로서 만기 전에 연지급신용장을 할인할 수 있는 권리를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으로 수권이 인정되고 은행으로서는 통일규칙 제15조가 정하는 바와 같이 사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보호된다고 하면서, 다만 확인은행으로 지정되지 않은 매입은행의 경우는 신용장에서 매입에 대한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는 그 어디에서도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연지급신용장에서의 만기는 개설의뢰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들었고 그 외 신용장에 관한 성문법, 선의의 매수인을 보호하는 각종 계약법 등의 근거를 들었다. 단, 그 전제로서 대금의 지급은 단순한 할인이거나 대출이 아닌 신용장대금의 종국적 지급이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Paul Turner²³⁾ : 미국 통일상법전 신용장편(UCC Article 5)의 규정과 무역거래의 활성화라는 신용장제도의 기초를 근거로 확인은행이나 수권 받은 지정은행의 만기 전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수권이 없는 매입은행의 경우도 미국 통일상법전에 규정된 바와 같이 선의의 당사자로서 보호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제도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John F. Dolan²⁴⁾ : 해당 국가의 법과 상사관행에 따르며,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은행관습은 연지급신용장이 만기 전에 할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이 관행을 수용한다면 개설은행의 입장에서는 연지급신용장이 만기 전에 다른 지정은행 등에 의하여 그 대금이 지급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고 본다.

22) 미국 University of Arizona 법대교수,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에 참여하였음. 채동현, 전계논문, p.186.

23) 미국의 신용장 관련 전문 변호사, "Standby and Commercial Letters of Credit" 공동 저자 중 1인임. 채동현, 전계논문, pp.186-187.

24) 미국 Wayne State University 법대 교수, The Law of Letters of Credit의 저자. 채동현, 전계논문, pp.187-188.

2. 부정적 입장

(1) 판례

1) 프랑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추상적인 채무부담은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용장이라는 국제거래에서 사용되는 법적 장치에 대하여 매우 많은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신용장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신용장 대금청구를 거절하는 사기의 개념을 매우 넓게 인정하고 사기에 기한 개설은행에 대한 신용장대금 지급정지 가처분도 매우 넓게 인정하는 것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필요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²⁵⁾

프랑스 판례는 연지급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확인은행의 만기 전 지급과 만기 전 사기사실 발견을 문제삼아 개설은행을 상대로 대금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한 사건에서 개설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은행이 이와 같은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면서 만기 전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은 확인은행이 자기 고유의 목적과 책임 하에서 행하는 할인에 불과하고 해당 은행은 신용장의 수의자가 가지는 권리 이상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면서 연지급신용장은 만기 전에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상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부연설명도 하였다.²⁶⁾

확인은행이나 지정은행은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만기 전에 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할 권리가 있는가에 관하여 프랑스 법원은 확인은행과 지정은행은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수권을 받았을 뿐이고 만기 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확인하는 것은 수권사항이 아니다 라고 보았다. 이는 연지급신용장에서 신용장 약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 일자에

25) 정진세, 전계논문, p.649.

26) 프랑스 대법원 1987. 4. 7. 판결, Credit General v. Banque Nationale De Paris.

지급한다는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의무는 절대적인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며 제반서류가 제시되면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 신용장의 상업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²⁷⁾

2) 영국

영국 법원은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 제10조, 제14조의 각 규정의 해석에 있어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확인은행은 만기에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수권을 받았을 뿐이고 만기 전에 그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거나 할인하는 것은 수권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았다. 즉, 개설은행이 확인은행으로 하여금 만기 전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수권을 할 의도였다면 인수신용장을 사용하여 환어음을 사용하였을 것이고 환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하는 방법으로 확인은행은 보호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환어음 사용에 있어 확인은행이 보호되는 법리가 어음 없이 거래되는 연지급신용장의 경우에까지 확대되어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²⁸⁾

영국 법원은 연지급신용장의 경우 만기에 있어 확인은행이 사기에 대하여 인식을 하였으면 가사 수의자가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기 전에 지급을 한 이상 그 위험은 확인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 법원의 판결은 확인은행의 지위를 지나치게 위태롭게 하고, 사기 예외를 너무 넓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서 비판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신용장 관련서류의 매입과 이에 대한 시장에서의 취급에 대한 상관행에 대한 입증이 실패한 사안으로서 그 결론만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²⁹⁾

27) Jame E. Byrne, Overview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 20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1, p.8.

28) 영국항소법원 Banco Stantander SA v. Banque Paribas.

29) Roger Fayers, Banco Santanders : Another View, *Documentary Credit World*, 2001. 2, pp.20-22.

3) 싱가포르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한 확인은행의 지위와 관련하여, 싱가포르 항소법원은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매입한 은행으로서 보호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즉, 본 사건에서 지급과 관련된 문구로서 연지급신용장에는 “Available against presentation of drafts at 180 days from the date of negotiation by deferred payment”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한 항소법원은 *negotiation*이라는 문구는 신용장의 유형 중 하나인 *by deferred payment*라는 문구와 함께 사용되어 모순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앞의 전치사도 *by*가 아니라 *of*가 있어 전체적으로 매입가능성에 의문이 있어 매입신용장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확인은행은 만기 전에 위와 같이 매입이 가능하지 않는 신용장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상 만기에 이르러 사기의 항변이 제출되면 이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³⁰⁾

(2) 견해

Gary Collyer³¹⁾ :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은 만기에 지급되어야 함으로 어떠한 명목으로 확인은행 혹은 지정은행이 만기 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면 이는 해당 은행의 위험부담 하에 한 것으로 사기가 밝혀지면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해당 신용장이 매입이 가능한 경우 매입은 환어음 혹은 신용장 관련 서류에 대하여 가능함으로 환어음이 없는 연지급신용장의 관련 서류를 매입한 경우라면 역시 통일규칙상 매입에 해당되므로 그 매입은행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Buddy Baker³²⁾ : 해당 국가의 법에 위임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30) 본 사건의 1심 법원은 “Available against presentation of drafts at 180 days from the date of negotiation by deferred payment”를 매입가능신용장으로 해석으로 개설은행의 사기항변을 배척하고 확인은행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31) ICC Banking Commission의 Technical Advisor, ABN AMRO Bank(네덜란드 은행)의 런던지점 근무. 채동현, 전계논문, p.186.

32) 은행전문가, ABN AMRO Bank(네덜란드 은행)의 근무,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 및 미국 통일상법전 신용장편 개정작업에 참여. 채동현, 전계논문, p.187.

개설의뢰인과 사이에 상환약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실제적으로는 개설은행이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신용장통일규칙상으로 개설은행은 연지급신용장을 개설함으로써 매입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고 연지급신용장은 만기에만 지급될 수 있으며 확인은행이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입이 아니며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한 경우는 보호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Rene Muller³³⁾ :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은 만기 전에 지급할 수 없고 다만, 개설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만기 전에 대금상당의 금원을 대여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라고 하면서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한 이상 개설은행이든 확인은행이든 혹은 지정은행이든 후에 사기가 밝혀지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IV. 연지급신용장의 문제점과 유의사항

1. 연지급신용장의 지급유예와 만기지급

연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 전에 지급 내지 매입가능성은 연지급신용장의 기본적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 먼저, 연지급신용장의 목적이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는 것에 있다는 견해에 의하면, 확인은행과 같이 신용장에서 수권을 받은 은행의 경우에는 만기에 지급하는 것 이외에도 매도인 즉, 수익자로 하여금 만기 전에 일정한 기간의 이익을 포기하고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는 것을 당연히 전제

33) 은행전문가, 스위스 Credit Suisse 은행근무, ICC Banking Commission 스위스 위원. 채동현, 전계논문, p.188.

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연지급신용장의 목적을 신용장거래의 바탕이 되는 매매의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가지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당연히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은 만기 전에 지급되어야 하고 따라서 만기 전에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지급하는 것은 해당은행의 위험으로 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대금지급 후 만기 전에 발견된 사기의 항변으로 만기 전 지급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전자는 연지급신용장이 개설의뢰인의 대금지급유예가 목적이라면 왜 인수신용장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고, 이탈리아 판결과 같이 연지급신용장의 목적과 의도가 상품의 검사에 있다는 것을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여 인정하지 않은 것은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의 사실상의 목적을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³⁴⁾ 한편, 후자는 신용장거래에 있어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는 기본을 해하는 것으로 신용장의 본질에 반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신용장거래에 있어 독립추상성을 고려하면 연지급신용장의 주된 목적은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대금의 지급유예가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당사자가 연지급신용장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수신용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환어음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경우 충분히 고려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2. 독립추상성 원칙과 Fraud Rule

신용장거래의 계약은 그 자체로서 독립적이며 어떤 매매계약에 영향을 받아 신용장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신용장거래는 상품이나 용역 또는 의무이행의 거래가 아니라 서류상의 거래원칙이다.

34) 정진세, 전개논문, p.661.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은 서류만을 근거로 수출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거래상품이나 용역 또는 의무이행을 근거로 수출대금의 지급을 결정할 수 없다.³⁵⁾ 이러한 신용장 독립추상성 원칙은 연지급신용장거래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독일의 고등법원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은 사기의 경우와 같이 명백한 권리남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개설은행과 확인은행 사이에 조기지급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 원칙은 연지급신용장에서도 적용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설은행이 아닌 확인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입상은 최초의 계약을 근거로 개설은행에게 확인은행에 대한 상환을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거래에서 독립추상성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영미국가에서는 판례를 통하여 소위 Fraud Rule이라고 불리는 사기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의 보호법리, 대륙법계에서는 신의성실의 원칙 혹은 권리남용의 법리에 의하여 그 예외를 인정하여 왔고 현재 신용장거래가 있는 국가에서 공히 이와 같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신용장 거래는 본질적으로 서류에 의한 거래이지 상품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은행은 상당한 주의로써 그 선적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되고 그 선적서류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의무까지 부담하지 아니하나 그 선적서류가 위조, 변조되었을 경우 은행이 위조에 가담한 당사자이거나 서류의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았거나 또는 그와 같이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는 신용장거래를 빙자한 사기거래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 은행은 더 이상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프랑스 법원은 독립추상성의 원칙을 필요 불가결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35) H.C. Gutteridge, M. Megrah, op. cit, pp.71-75.

우리 대법원은 선적서류가 위조된 경우 매입은행이 위조행위의 당사자로서 관련되어 있거나 매입 당시 서류가 위조된 문서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조된 문서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신용장대금의 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⁶⁾

신용장의 독립·추상성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권리행사가 이 원칙을 악용하는 이른바 사기적인 청구인 때에는 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개설은행은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나아가 지급을 거절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이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독립·추상성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신용장에 따른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는 국가에 따라 상이하고 국제적인 상관습 법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독립추상성 원칙과 Fraud Rule에 관한 문제는 신용장의 준거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3. 연지급신용장에서의 대금지급시기

확인은행이나 수권을 받은 지정은행은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만기 전에 대금을 수출상에게 지급할 권리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수출상은 수출대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대법원은 개설은행에 대한 지정은행의 수권 속에서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지급이 만기 전에 지정은행이 선적서류를 매입하였더라도 개설은행은 만기에 그 대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결하여 은행이 만기 전에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만기일에 수입상이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수용하여 수출상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다. 미국 아리조나 대학 Boris 교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9조의 내용 어디에도 연지급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36)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판결.

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법원의 판례도 연지급 신용장의 대금을 만기 전에 지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판례는 확인은행이나 지정은행이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에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할인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용장을 매입하였는데 만기 전에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사기를 주장하는 경우 만약 만기 전 매입에 대하여 확인은행이 선의였다면 만기에 개설은행은 확인은행에 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연지급신용장은 대금을 만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확인은행이 만기 전에 대금을 지급한 것은 확인은행이 자기 고유의 목적과 책임 하에서 행하는 할인에 불과하고 해당 은행은 신용장의 수익자가 가지는 권리이상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였다. 영국, 싱가폴도 프랑스 판례와 같은 견해를 견지하고 있어 실무에서는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지급신용장은 수입상이 수입상품의 판매대금으로 수입대금의 결제 자금을 마련하기 쉽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은행이 신용장의 금액을 수출상에게 만기 전에 지급했다고 해서 수입상이 갖고 있는 혜택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은행은 신용장관계에 있어서 위임자로서 지급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수출상에게 수출대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³⁷⁾

4. 품질하자로 인한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수입상은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갖고 수입상품을 인수한 다음 수입상품의 품질이 수출입매매계약에서 약정한 상품의 품질과 상이한 경우 개설은행에게 수출대금의 지급을 중지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우리 대법원은 수입상이 수입된 상품의 품질을 이유로 연지급은행이나 개설은행에게 만기 전에 수출대금의 지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가

37) 오병석, 전계논문, p.264.

없다고 보았으며, 연지급신용장의 목적은 수입상이 지급 기간 중에 물품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아니고 이 물품이 계약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용장개설은행으로 하여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는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법원 등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 법원은 연지급신용장의 주된 목적이 개설의뢰인에게 대금의 지급유예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고 신용장 거래의 바탕이 되는 매매의 매수인이 물건을 받아 그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기간을 가지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즉, 연지급신용장은 만기 전에 개설의뢰인으로 하여금 상품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

한국 법원과 프랑스 법원이 품질하자로 인한 신용장대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신용장거래는 신용장에 명시된 서류만을 근거로 수출대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도 신용장거래와 마찬가지로 선적서류가 수출상으로부터 직접 개설은행에게 제시되어 서류가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을 충족시키면 수입된 상품의 품질에 관계없이 만기일에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의무는 존재하게 된다. 즉, 상품의 품질이 매매계약에서 명시한 품질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수입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수입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수출입매매계약서를 근거하여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

V. 결 론

연지급신용장은 인수신용장을 사용하는 거래과정에서 환어음의 이용이 그다지 발달되지 않은 국가 또는 어음인지세가 높은 국가 등에서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이용해 온 결과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신용장 형태를 형성하였다. 이렇듯 연지급신용장은 수출어음을 발행함으로써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출환어음을 발행하지 않고 선적서류나 기타 서류를 근거로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유럽의 상거래에서 주로 이용되어 왔다.

각국의 판례나 학자·전문가들의 견해를 통하여 연지급신용장의 본질이나 지급시기 등을 살펴보았으나 아직 이에 대한 각국의 판례가 국제적으로 통일안이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미법과 대륙법 간에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지급신용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국제거래에서 연지급신용장은 매입신용장과 마찬가지로 유통되고 있고 그 만기 전 지급의 위험에 대하여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영국법원이 프랑스 법원의 법리를 따라 연지급신용장의 수권법위를 대단히 제한하는 판결을 내렸고 우리 대법원은 국제적 신용장 거래에서 선의의 은행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지급신용장 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들의 입장 즉, 연지급신용장의 기본적 목적, 독립추상성의 원칙과 Fraud Rule, 연지급신용장에서의 대금지급시기, 품질하자로 인한 신용장대금의 지급거절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지급신용장을 이용하는 무역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신용장통일규칙의 개정시에 연지급신용장거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국제무역거래의 대금결제와 상품수입을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뿐만 아니라 무역실무에서 연지급신용장의 특성과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습득하여 각 국가별로 연지급신용장의 사용을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한수 외,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 국제금융연구, 1997.
- 남풍우, 무역결제론, 도서출판 두남, 2001.
- 배용원, 신용장, 무역경영사, 2003.
- 석광현, 연지급신용장의 만기전 매입 또는 지급, 민사판례연구, 2003.
- 유중원, 신용장론-신용장의 법리 및 신용장통일규칙의 축조해설-, 육법사, 1998.
- 오병석, “연지급신용장에 대한 매입은행의 면책과 사례분석”, 무역학회지, 제29권 제2호, 한국무역학회, 2004.
- 이제현, 연지급신용장 거래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제 19권 제3호, 2004. 9.
- 정진서, 연지급신용장의 만기 전 지급에 관한 프랑스판례의 특이한 입장, 상사법 연구, 정진세교수정년기념, 2001. 9.
- 채동현, 연지급신용장 대금의 만기전 지급과 매입의 법률관계, 인권과정의, Vol.325, 대한변호사협회, 2003, 9.
- Clive M. Schmitthoff, *Export Trade*, 9th ed., london, Stevens & Sons Ltd., 1990.
- Gerald T. McLaughlin, U.C.C. Article 5 Symposium : Should Deferred Payment Letters of Credit Be Specifically Treated in A Revision of Article 5 ?, 56 Brooklyn L. Rev. 149, *Brooklyn Law School Spring*, 1990.
- Gutteridge, H.C., Maurice M., *The Law of Banker's Commercial Credits*, 7th ed., Europa Publications Ltd., London, 1984.
- Jame E. Byrne, Overview of Letter of Credit Law & Practice in 2000,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 Practice*, Inc., 2001.

Roger Fayers, Banco Santanders : Another View, *Documentary Credit World*, 2001. 2.

신용장통일규칙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3713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37879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1다68266판결

독일 프랑크푸르트 고등법원 1981. 3. 13. 판결(Wertpapier Mitteilung 17-25 April 1981 S.445).

영국항소법원 Banco Stantander SA v. Banque Paribas.

이탈리아 볼로냐법원 1981.5. 15.판결(Banca Borse Titolo de Credito 1981.3. 17).

프랑스 대법원 1987. 4. 7. 판결, Credit General v. Banque Nationale De Paris.

ABSTRACT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nstructions of Negotiation Before Maturity under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 Focus on the Cases of Different Countries -

Kyung-Bae Kim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is the L/C that makes the issuing bank to pay a beneficiary at maturity stipulated in the credit. In this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transaction, is it possible that a confirming or nominating bank pay or negotiate before maturity? and the confirming or nominating bank have legal protection when paid or negotiated before maturity? These problems are raised in argument. By the way, Korea, Switzerland, Germany, and Italy are positive on the above question, but France, United Kingdom, and Singapore are negative. Therefore, when using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it is required to keep in mind that the understanding of maturity stipulated in the credit is different among countries, legal principles of each nations, and researchers. And other problems are raised also as follows; the application of Fraud Rule and principle of independence and abstraction as nature of credit, when to pay credit amount to beneficiary, and refusal of payment due to poor quality. Finally, it is required to use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after full understanding of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pointed out in this paper.

Key Words : Deferred payment letter of credit, Negotiation, Fraud Rule, UCP